

의안번호	2219750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F34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 변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이 아닌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 내국세 연동 비율: (현행) 20.79% → (개정안)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의 산정방식은 현행 유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 연동비율을 현행 20.79%에서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로 변경하는 경우, 교부금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안 제3조)
- 교부금 재원은 현행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과 교육세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구성

- 내국세 등의 연동되는 부분의 규모는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20.79%
- 교육세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규모는 교육세 총액에서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을 제외한 금액의 40%
 - ※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며, 교육세에서 금융보험업자분을 제외한 금액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
-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연동비율을 일정비율(20.79%)에서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부금의 증감이 예상됨
 - 내국세 연동비율: (현행) 20.79% → (개정안)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의 산정방식은 현행 유지

[표 1]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구성

조항 ¹⁾	현행	개정안
제1호	$[\text{내국세} - (\text{개별소비세 담배분} \times 45\%)] \times 20.79\%$	$[\text{내국세} - (\text{개별소비세 담배분} \times 45\%)] \times (\text{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율})$
제2호	$(\text{교육세액} - \text{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 \times 40\%^{2)}$	(좌 동)

주: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의미

2)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며, (교육세액 -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

- 개정안으로 산정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은 향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에 따라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재원의 증감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국세 연동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교육재정 수요의 범위 등이 불확실하고 개정안의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의 내국세 연동비율을 결정하는 기초변수인 교육재정 수요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정수요에 포함되는 범위가 불확실하여 향후 교육재정 수요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
 - 또한, 개정안에서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반영할 연동비율의 산정

방식이 시행령 위임사항으로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3.12.)에 따른 향후 5년(2027~2031년)간 학령인구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표 3] 학령인구 전망치: 2027~2031년

(단위: 만명)

전망치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학령인구(6~17세)	474.6	456.2	432.8	408.7	384.4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3.12.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